

사업 연도	~	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(갑)	법인명
			사업자등록번호

1. 손금산입액 조정

① 소득금액	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	③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	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(①+②+③)	⑤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 른 금액	⑥-1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결 손금 중 공제 대상액 (=②)	⑥-2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
⑦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	⑧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3 및 제 121조의25에 따른 금액	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[④-⑤-(⑥-1)-⑦-⑧]	⑩ 손금산입률 50(80,100) ----- 100	⑪ 손금산입한도액 (⑤+⑧+⑨×⑩) 또는 [⑤+⑧-(⑥- 2)]	⑫ 손금부인액 [(②-⑪)>0]	

2.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

⑬ 사업연도	⑭ 손금산입액	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	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	⑰ 익금 산입액	⑱ 잔 액 (⑭ - ⑮ - ⑯ - ⑰)	
					⑲ 5년 이내분	⑳ 5년 경과분
(당 기)						
계						

3.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

⑳ 사업연도	㉒ 「법인세법」 제13조 제1항 제1 호의 결손금	㉓ 공제한도 적용 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(누적분)	㉔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(㉒-㉓)	㉕ 기타 수익 사업 소득금액 [④-⑤-⑦-⑧]	㉖ 「법인세법」 제13조 제1 항에 따라 공 제받는 이월결 손금	㉗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 결손금(당기발생분) [Min(㉔, ㉕)-㉖]

작성 방법

1. ① 소득금액란: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㉞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해당 서식 ㉞ 소득산입란, ㉞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㉞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.
2.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: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3. ⑤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⑥-1란은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을 적으며, ㉡ 공제대상이월결손금란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.
5. ⑧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: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되,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⑩ 손금산입률란: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.
8. ⑪ 손금산입한도액: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'⑤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'에서 '⑥-2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'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9. ⑫ 손금부인액과 ㉡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.
10. ⑭ 손금산입액란: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, 각 사업연도별(②-⑫)의 금액을 적습니다.
11.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: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,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.
12.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: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,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.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.
13. ⑰ 익금산입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.
14. ⑱ 잔액란: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⑱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, ⑱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.
15. ㉡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"추가납부세액계산서(별지 제8호서식 부표6)"에 따라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16. ㉢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(누적금액)을 적습니다.
17. ㉤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란: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18. ㉥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란: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(109)란의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19. ㉦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(당기발생분)란: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(을)	법인명
			사업자등록번호

지출내역				④ 금액	⑤ 비고
① 구분	② 적요	③ 지출처			
		상호(성명)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	
I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부금					
II. 고유목적 사업비					
III.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					
IV. 기 타					
⑥ 계					

작성 방법

- 「법인세법」 제29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.
- ② 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.
예) 장학금 지급, 부동산(토지와 건물)을 구분하여 기채)취득, 의료기기 취득, 인건비(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구분하여 기채), 임차료, 전기료, 전화료 등
-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④ 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,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.
- ⑥ 계란은 "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7호서식(갑)]"의 ⑩란의 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